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07. 9. 10.  
사회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2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 라. 상정일자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년 9월 5일)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

#### 가. 제 안 이 유

- 2007. 1. 5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2007. 4. 17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 요 내 용

- 시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증가산금 징수적용 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 제1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등의 점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함(안 제7조)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점용료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된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
  - 정액제 점용료 38% 인상(1993년 대비)함.

###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점용료의 산정기준)의 개정(2007. 1. 5. 공포·시행)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가 정율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

례」가 2007. 4. 17. 개정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 제1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 이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2006. 3)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른 것이며,
- 안 제8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증가산금 면제대상 범위조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방세법」을 준용하던 증가산금 면제대상 범위를 동조례 상위법인 「도로법」 제78조에 맞추어 상향조정(체납액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7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도로점용료 80/100감면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2006. 4. 28)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 정액제 점용료 조정에 대하여는 정율제 점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점용료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정액제 점용료는 1993년 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아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2007. 1. 5)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일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정 1

-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요함.

- 수정 2

- 부칙③(유효기간) “제2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를 “제2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로 수정을 요함.
- 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임.

#### 4. 修正案 要旨

##### 가. 수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 나. 주요골자

- 안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를 삭제.
- 부칙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 5. 審査結課 : 修正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7호
----------	-----------

제안년월일 : 2007. 9. 5  
제 출 자 : 신흥식 위원 외 1인

## 1. 수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임.

## 2. 주요골자

- 안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를 삭제.
- 부칙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삭제.
- 부칙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 4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② (생략)</p> <p>③(유효기간) 제2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유효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	----

제출연월일 : 2007.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2007. 1. 5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2007. 4. 17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현 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개정내용

- 가.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증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  
(체납액 3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조정
- 나.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  
에 맞게 정액제 점용료 38%인상 조정
- 다.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
- 라. 주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도로법 제78조
  - 2)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점용료 산정기준(개정 2007. 1. 5)]
  -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제4509호(2007. 4. 17)]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 표지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 4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받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 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료	
1.전주·공중 전화등 지상 시설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농업용 수관,전기관,전기통신 관,가스관,송열관 송 유관,작업구( 맨 홀), 전력구,통신구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앙 카)암거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1,80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초과			63,2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기 타	표시면적 1㎡	1일	400
				1년	122,0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종교행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 타			122,0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육교상가·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 이외의 점용물
9.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1.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 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4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3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4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